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소개



2023년 9월 8일(금)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홍승헌 부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규제 샌드박스란?

시장에 없는 신기술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할 때,

기존 규제로 인해 도입이 지체되지 않도록,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일부 완화해서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해주는 제도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15.3월 영국 정부 수석과학보좌관 월포트 박사는 『핀테크 미래(Fintech Future)』 제목의 보고서에서 의약계에서 임상실험을 통해 신약개발을 해온 점에 착안하여 금융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

국내 규제 샌드박스 체계



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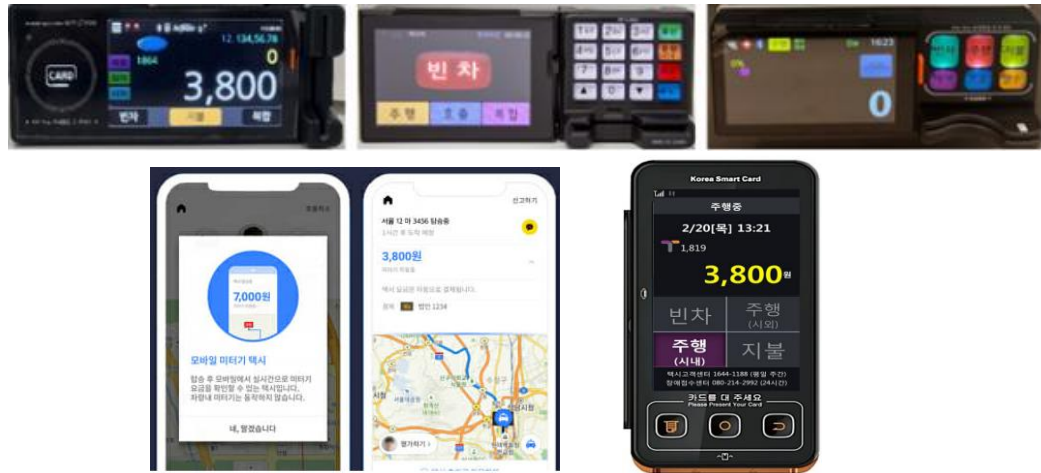
- 교통 분야에 자율주행차·UAM 등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하면서 모빌리티 패러다임이 급변
- 규제는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혁신에 장애가 되거나 혁신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모빌리티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
- 모빌리티 분야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함으로써 산업혁신의 마중물
 - * 국토부 소관 규제는 전체 규제 중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 부처 중 3위에 해당
- 기존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중에서도 모빌리티 분야의 비중이 큼
 - 2023.7월 현재 샌드박스 승인 918건 중 모빌리티 분야는 148건으로 16.1%를 차지



모빌리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 승인 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합계
수소 전기차	14 (42.4%)	5 (17.9%)	5 (13.9%)	21 (48.8%)	3 (37.5%)	48 (32.4%)
여객운송	7 (21.2%)	18 (64.3%)	10 (27.8%)	3 (7.0%)	1 (12.5%)	39 (26.4%)
자율주행	6 (18.2%)	3 (10.7%)	10 (27.8%)	7 (16.3%)	2 (25.0%)	28 (18.9%)
퍼스널 모빌리티	4 (12.1%)	1 (3.6%)	7 (19.4%)	6 (14.0%)	1 (12.5%)	19 (12.8%)
화물수송	1 (3.0%)		2 (5.6%)	4 (9.3%)		7 (4.7%)
드론		1 (3.6%)	2 (5.6%)	1 (2.3%)		4 (2.7%)
스마트 해운	1 (3.0%)				1 (12.5%)	2 (1.4%)
기타				1(2.3%)		1(0.7%)
총 합계	33 (100%)	28 (100%)	36 (100%)	43 (100%)	8 (100%)	148 (100%)





GPS 기반 앱미터기(총 7개 과제)

(Before) 택시미터기는 기계식만 가능하고 GPS 기반의 앱미터기 관련 기준부재

(규제개선)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검사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21.2월)

(After) GPS 정보를 활용, 차량위치와 이동거리, 이동시간을 계산하여 택시주행요금산정이 가능(택시사업자가 선택적 사용 가능)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총 3개 과제)

(Before) 택시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

(규제개선) 국토부 “택시발전법,” “여객자동차법” 등 개정(21.7월)

(After) 여객의 안전보호 조치 이행 시 자발적 택시 합승 가능

자발적 택시동승 플랫폼 반반택시

최대 50%
같이 타고 할인받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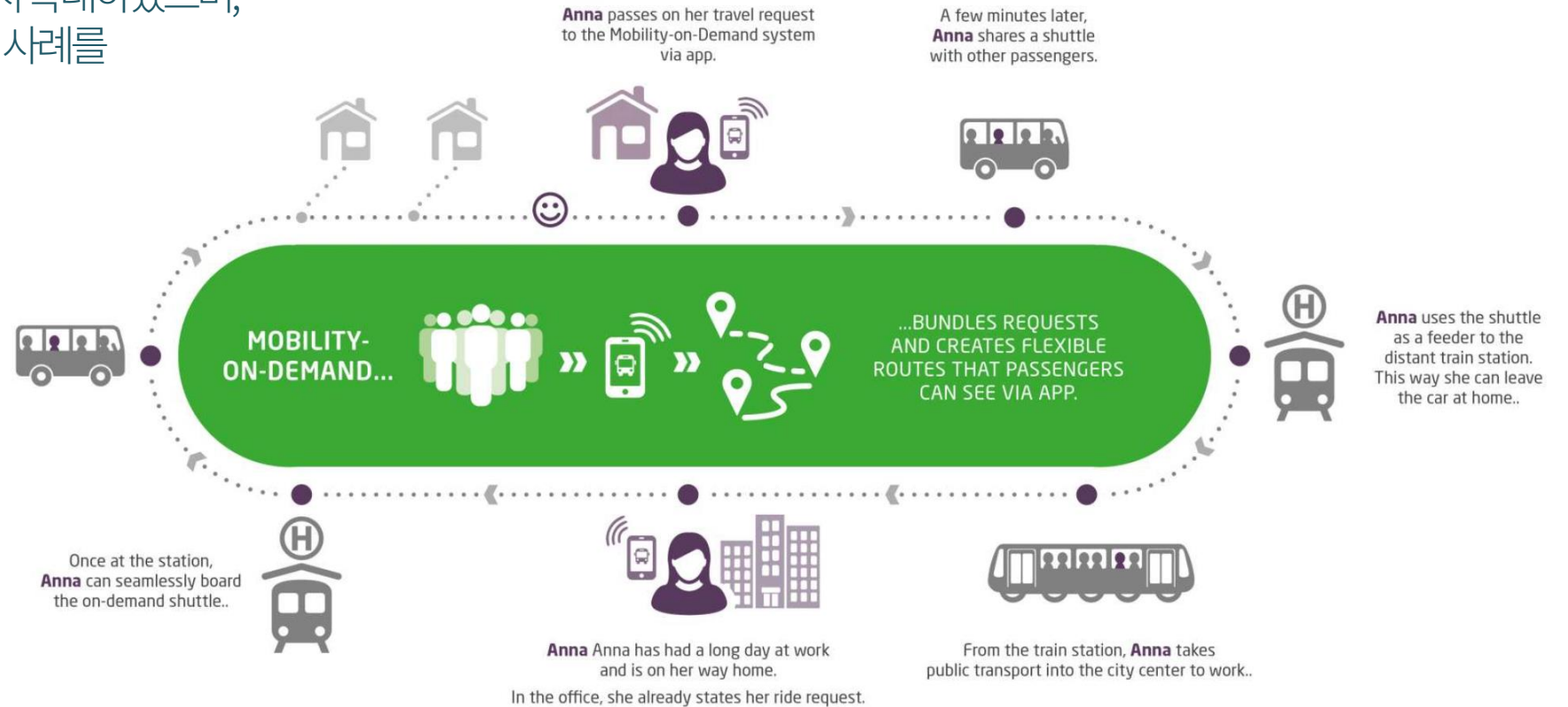


수요응답형(DRT) 교통서비스(총 9개 과제)

(Before) DRT의 운행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

(규제개선) 국토부 “여객자동차법” 및 시행령 개정(23.4월)

(After) 운행범위를 교통불편 지역까지 확대하였으며,
신도시와 심야시간대 등의 교통불편 사례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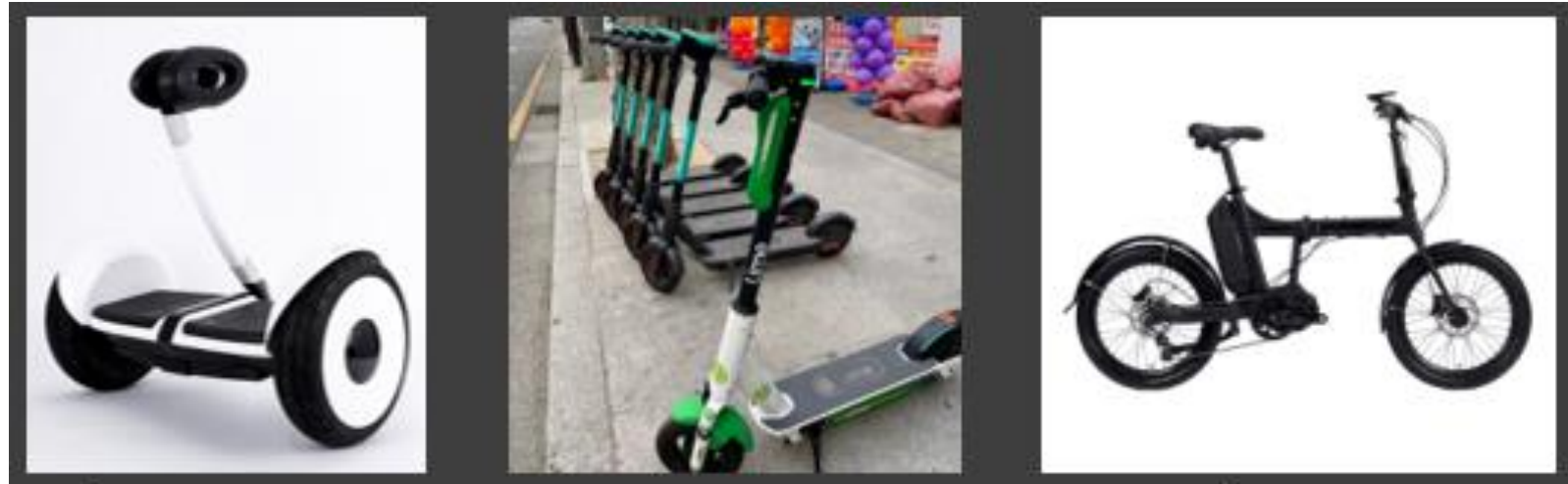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총 4개 과제)

(Before) 전동킥보드는 보도통행이 불가하고 차도 통행이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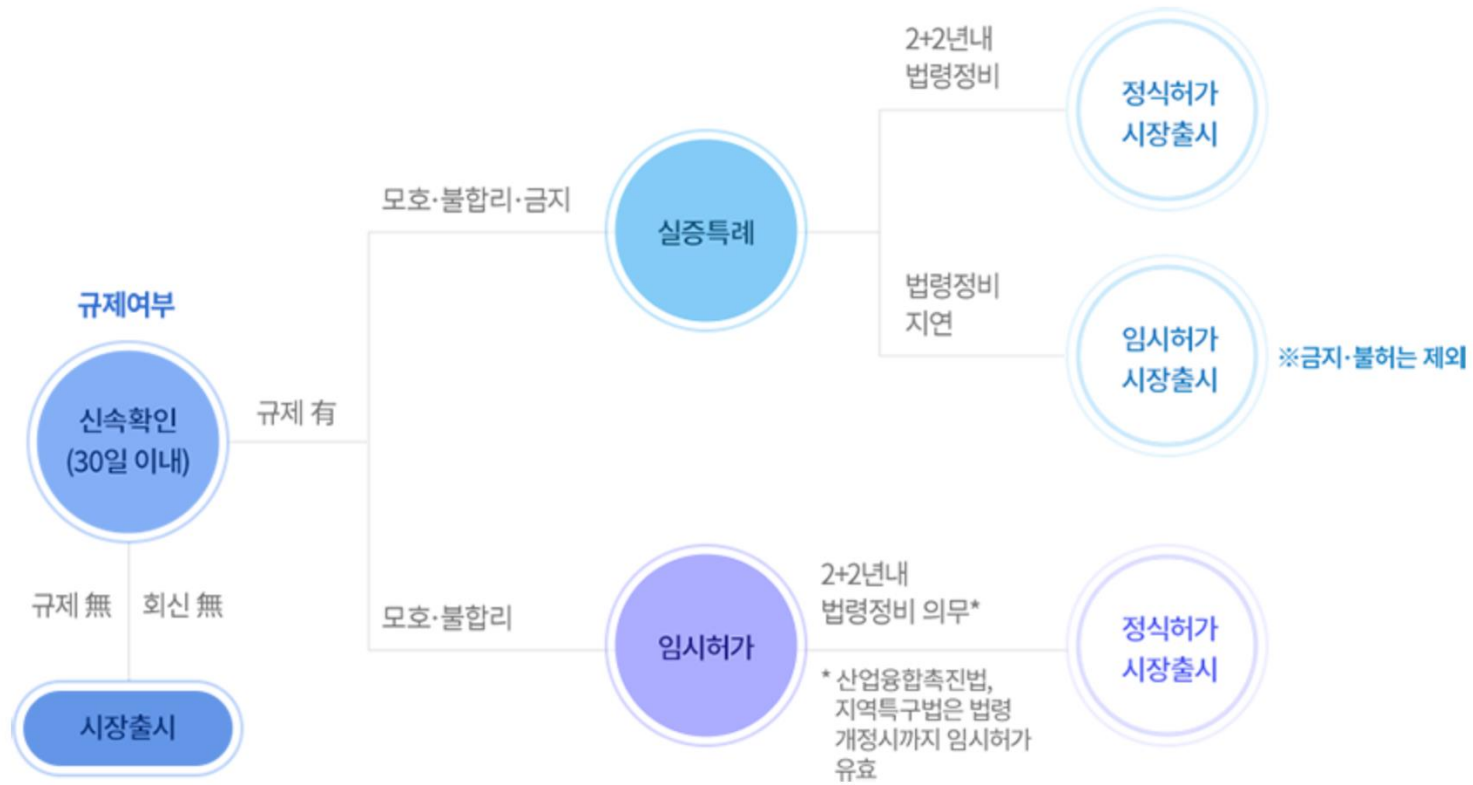
(규제개선) 경찰청 “도로교통법,” 행안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개정(20.6월)

* 국토부 “PM법 제정” 추진 중 (23.3월 상임위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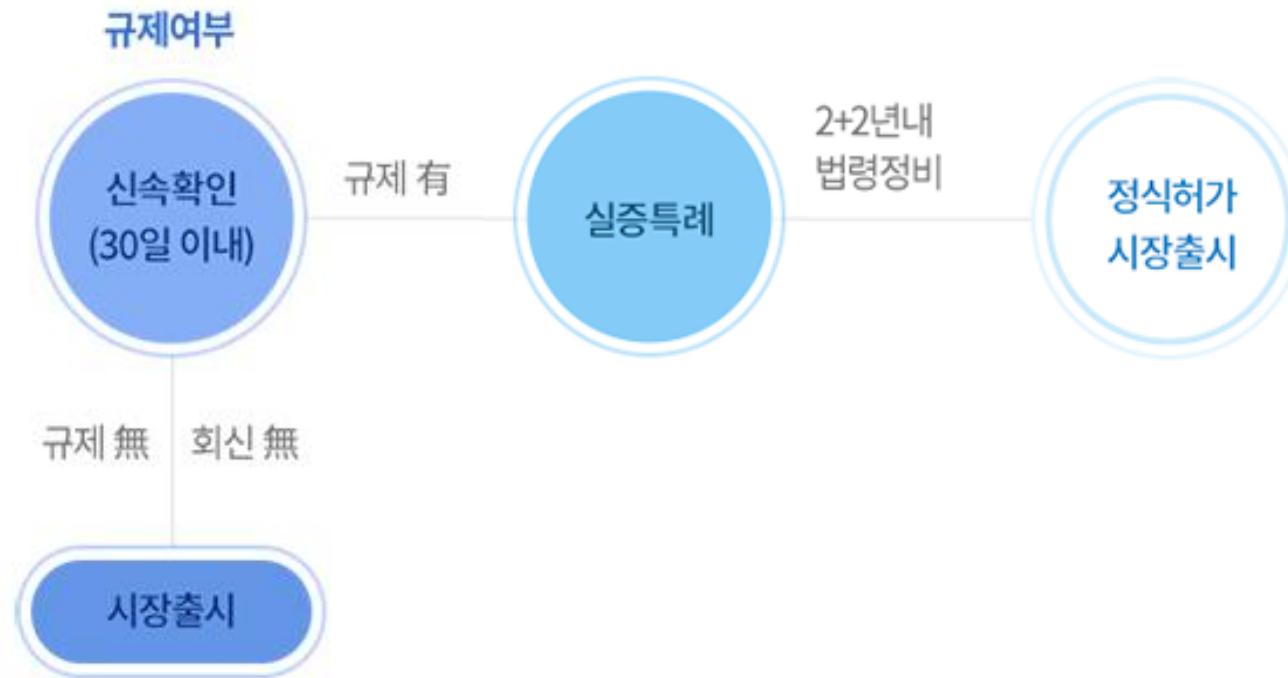
(After) 개인형 이동장치(최고속도 25km/h, 30kg 미만)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타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신청대상은? : 주요 용어 해설(법 2조)

- **모빌리티**: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
- **모빌리티 수단**:
 - 자전거 · 자동차 · 열차 · 항공기 및 선박
 - 보행 등 비동력 교통수단
 -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
- **모빌리티 기반시설**:
 - 도로 · 철도 · 공항 · 항만 · 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 첨단기술이 접목된 모빌리티 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 상기 시설에 부속되거나, 모빌리티 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보조하는 유무형의 시스템(전산시스템 포함)
- **모빌리티 서비스**: 모빌리티 수단 · 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직접 이동하거나 타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모빌리티 수단 · 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

신속확인

• 신속확인이란?

신청기업의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인허가사항 등의 필요여부 및 관련 규제일체 등을 유관 정부부처에 신속하게 확인하는 제도



신속 확인의
신청 및 진행

신청서 작성 및
법률 컨설팅을
통해 보완

기업이 신청서류
최종본을 제출시,
검토 후
관계부처에
해당 서류 송부

관계부처에서
신청서류 검토 후
30일 이내
의견회신

기업에
신속확인 결과통지
(실증특례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실증특례

- **실증특례란?**

신기술 · 서비스를 시험 및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규모, 지역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

- **신청조건**

- 근거 법령에 모빌리티 수단 · 기반시설 · 서비스 및 기술에 맞는 기준 · 규격 · 요건 등이 없는 경우
- 근거 법령에 따른 기준 · 규격 · 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 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유효기간**

- 2년 이내로 모빌리티 혁신위가 결정
-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 정비되지 않은 경우, 최장 2년 연장 가능(국토부장관 결정)
- 승인 기업은 만료 2개월 전까지 법령 정비를 요청 가능

실증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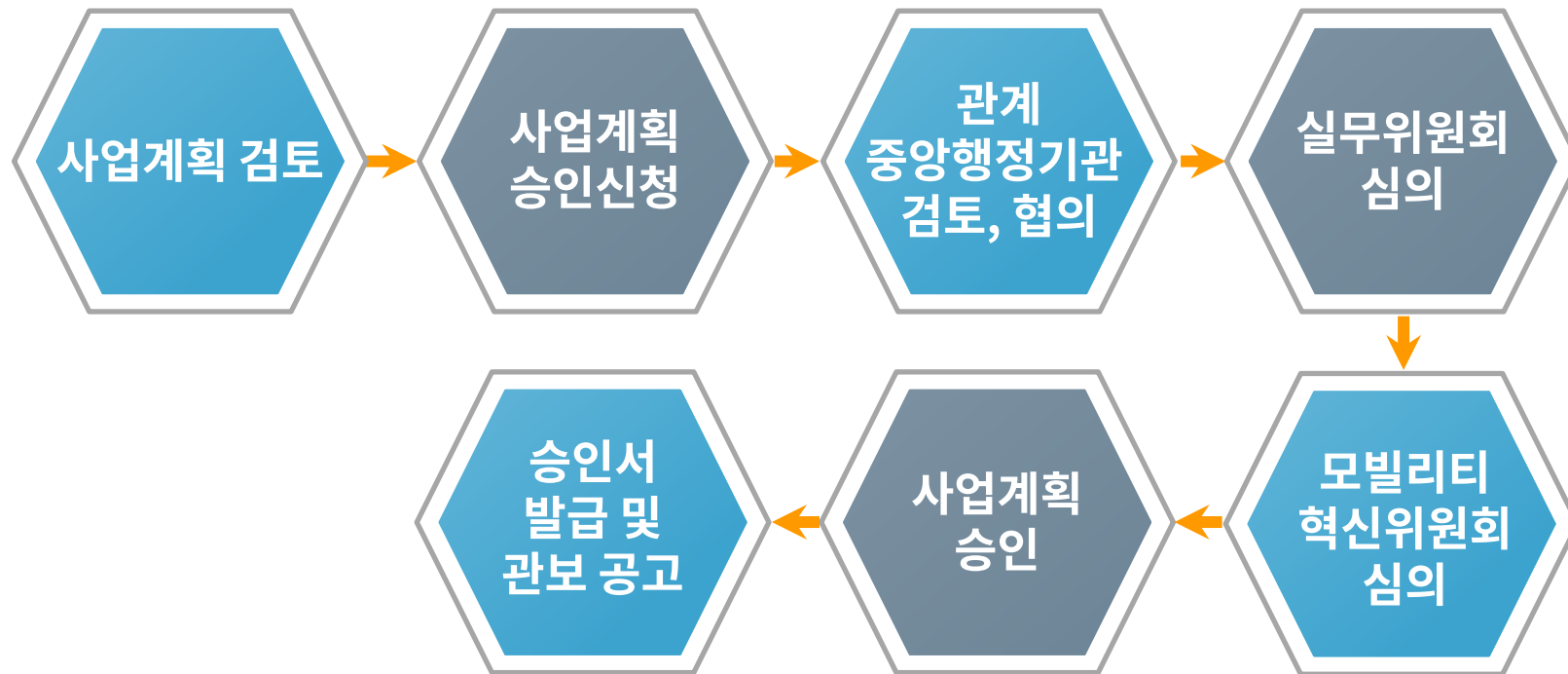
• 심사기준

- 사업실시계획서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 기반시설 · 서비스 및 기술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의
-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 실증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방안의 적절성
- 국민의 생명 · 건강 · 안전 및 환경 · 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 처리
- 그 밖에 실증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 시행조건

-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협의를 거쳐 특례로 인해 발생가능한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 마련

실증특례 진행절차



FAQ

1.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 법 시행일인 10월19일 부터 홈페이지(molit.go.kr 또는 www.kotsa.or.kr) 또는 유선(054-459-7253)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청사업의 사업실시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 시행 전이라도 한국교통안전공단(sandbox@kotsa.or.kr)에 문의하시면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신속한 진행을 지원합니다.

2. 사전 상담시, 규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나요?

▶ 규제 해당 여부는 규제 신속 확인 신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규제 신속 확인 과정에서 법률 상담과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통해 30일 이내에 규제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실증특례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거치며, 소요되는 시간은 사업별로 상이합니다. 타 규제 샌드박스는 심의에 평균 4~5개월 가량이 소요되나,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는 대부분 규제 소관 부처가 국토부이므로 심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4. 모빌리티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업 실증 비용(1.2억 원 이내) 및 책임보험료 일부(평균 5백만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FAQ

5. 규제 신속확인을 실증특례 이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하나요?

▶ 규제 신속확인 and 실증특례는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로, 순서에 관계없이 기업의 목적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기업이 알고있는 규제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기에,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특례가 필요한 규제를 명확히 하는 과정을 선행하도록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6.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나요?

▶ 규제 신속확인은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사항 및 규제 등의 확인을 돕는 제도입니다. 규제 신속확인은 규제 특례 및 규제개선 제안 등과는 목적이 맞지 않으므로, 규제개선 등의 요청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규제개혁신문고 등의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7. 실증특례 사업 선정 후, 지자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 실증사업 지역이나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게 되고, 규제특례 승인 내용에 따라 실증사업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가 모여 운영하는 지자체 협의회를 통해 규제 심의 통과 후 모니터링을 통해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

2023년 9월 중 : 온오프라인 규제애로 상담 및 법률 컨설팅 지원, 신규안건 접수

2023년 10월 19일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모빌리티 혁신법)” 시행

2023년 12월(잠정) : 제1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개최

* 12월 심의를 위해 법 시행 이전이라도 사전 컨설팅 등 절차를 지원할 예정